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42

발의연월일: 2024. 8. 8.

발 의 자:윤한홍ㆍ권성동ㆍ주진우

최수진 · 김종양 · 이종욱

김선교 • 서일준 • 박대출

김기현 • 한기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공항 건설 및 혁신도시 조성 등과 같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해당 사업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국책 사업인 신항만 건설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본력과 기술력이 우세한 대기업 위주의 계약 입찰 참여로 지역기업이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신설).

법률 제 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6(예정지역 기업의 우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1조의6(예정지역 기업의 우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우대할 수 있다.